

2022년도

##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음식류(식사와 수육 외 4종) 및 장의차량, 제단장식 위탁공급 입찰 재공고

- 거창적십자병원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본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의 전 과정에서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별첨의 청렴 계약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위반한 경우 거창적십자병원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2. 11.



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1. 발주기관 : 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번호 : 제20221129002-00호

나. 입찰건명 :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음식류(식사와 수육 외 4종) 및 장의차량, 제단장식 입찰 재공고(그룹별 개별입찰)-긴급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단일예가, 직접입찰

라. 물품내역 및 추정금액

(원, %, 부가세포함)

그룹 구분	입찰내용	추정 총액	견적방법	비고
1	장례식장 식사 및 수육	200,000,000	수수료	추정총액은 2021.10.01 ~ 2022.09.30.까지의 매출을 바탕으로 함.
2	떡류	4,000,000	수수료	
3	과일류	15,000,000	수수료	
4	부침개류	25,000,000	수수료	
5	장의차량	71,000,000	수수료	
6	건어물	7,000,000	단가 구매	
7	제단장식	35,000,000	단가 구매	
합 계		357,000,000	개찰 당일 공개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그룹별 규격서” 참조

마. 입찰일정

가. 공고기간 : 2022.11.29. ~ 2022.12.05.

나.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및 장소 : 2022.12.05.(월) 14:00 거창적십자병원 총무팀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12.05.(월) 15:00 거창적십자병원 원장실

바. 투찰 기준(그룹별 개별입찰)

- 장례식장 식사 및 수육, 떡, 과일, 부침개, 장의차량 : 공급 수수료율(%) 투찰

- 제단장식, 건어물 : 투찰 총액 = 품목별 예정 수량 x 품목별 투찰 단가

※투찰서는 반드시 밀봉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별도 접수하며

휴일은 투찰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사. 계약기간 : 과업일로부 1년

아. 인도조건 :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 개찰 방법 : 제출된 투찰율 및 견적가에 대한 직접 개찰(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1항2호)

4.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계약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나. 입찰공고일 이전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 거창군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 품목 납품에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본원에 입찰 품목을 원활히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입찰공고일 일반음식점 운영 업체 중 본원 장례식장에 식사 및 수육, 떡류, 과일류, 부침개류, 장의차량, 견어물을 첨부된 계약특수조건에 의해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는 업체

## 5. 입찰 참가 등록 서류

-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첨 서식 참조)
  -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다. 인감증명서 1부
    - 서류 등록 시 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법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1부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라.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 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를 포함하여 제출 바랍니다.
  - 마. 입찰보증 각서 1부
- ※ 본 서류는 우편접수 불가하며 거창적십자병원 총무팀에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6. 개찰에 관한 사항(그룹별 개별 개찰)

- 가. 개찰 시 인감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 투찰서 및 예정 가격에 관한 서류는 거창적십자병원에서 준비합니다.
  - 다. 입찰 및 개찰 장소는 입찰 당사자 또는 등록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하며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찰 시간 경과 후 입찰 및 개찰 장소 출입문을 폐쇄합니다.

## 7. 입찰 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입찰 등록 서류가 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 되지 않은 경우
- 다. 입찰자 본인 또는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니 자가 한 입찰
- 라. 업체 간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하는 등 계약 담당 직원의 공정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마. 입찰서에 기재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 의사를 밝히고 계약 담당 직원이 이를 인정 한 자의 입찰
- 바. 본 공공에 명시된 입찰 조건을 위반한 입찰  
합니다. 마.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
- 바.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가. 2인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는 입찰로 낙찰하한율(88%) 이상 제한적최저가로
  - 장례식장 식사 및 수육, 떡, 과일, 부침개, 장의차량 : 예정공급수수료율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 수수료율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제단장식, 견어물 : 품목별 예정 수량 x 품목별 = 투찰 총액이 최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개찰 결과 동일 가격의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3호에 의거 즉시 추첨으로 낙찰 업체를 선정합니다.
-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2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9. 계약에 관한 사항(그룹별 개별 계약)

- 가. 계약은 수수료 및 총액 입찰로 계약을 체결하며, 이 경우 병원의 사업 상황에 따라 예정수량을 초과, 또는 미만으로 구입될 수 있음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제단장식, 견어물 계약은 총액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
- 나. 구입될 상품은 비과세 상품이지만 낙찰자의 특성상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경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포함 합니다.

10. 관련 서류 열람

- 가. 거창적십자병원 총무팀, 거창적십자병원 홈페이지([www.rch.or.kr/geochang](http://www.rch.or.kr/geochang)),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http://www.g2b.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1. 계약체결 이행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청렴·투명·세계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거창적십자병원 장례가 완료 된 정산 내역서를 첨부 하여 15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 한다. 이때 수수료는 지정계좌 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12. 기타사항

- 가. 본 입찰 공고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거창적십자병원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거창적십자병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나.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규격관련 : 본원 장례식장 ☎ 055-949-3439
  - 투찰 및 계약관련 : 총무팀 구매담당 ☎ 055-949-345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 장례식장 식사 및 수육 규격서

## 1. 조문객 제공 음식(주계약 품목)

품목	규격	단위	예정수량	비고
식사류	- 밥, 국 - 육 개 장 - 시래기국	인분	20,000	반찬4종 포함
사태수육 (삼겹/목살/발목살)	600g	근	5,000	쌈장, 새우젓 포함

## 2. 내부재물(제단 상차림으로 병원의 요청에 의해 납품)

구분	품목	비고
상식	밥, 국, 물, 조기구이, 나물5종	
발인제	수육(2근), 조기구이, 전, 나물5종	
- 나물 5종 : 콩나물, 무,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 밥은 백미로 하고 국은 탕국으로 한다.		

## 3. 외부제물(발인 후 상주의 요청에 의한 납품)

구분	품목	비고
신산제 개토제	제단세트, 명태포, 오징어, 대추, 밤	
평토제	제단세트, 밤, 대추, 꽃감5개, 배3개, 사과3개,	
노 제	제물떡, 유과, 수박, 바나나, 수육, 모듬전,	
반혼제	나물3종, 탕, 밥, 생선1마리, 건어포, 오징어,	
삼우제	가오리, 문어, 건홍합, 명태포	
화장제	제단세트, 명태포, 오징어, 문어, 대추, 밤,	
탈상제	꽃감 3개, 사과3개, 배3개, 바나나, 제물떡, 유과	
- 제단세트 : 막걸리2병, 초2개, 향1개, 젓가락, 종이컵, 접시세트		

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 장례식장 떡류 규격서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기정떡	1되	되	각 170	3되/1BOX
시루떡	1되	되		
인절미	1되	되		
꿀떡	1되	되		

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 장례식장 과일류 규격서

품목	규격	단위	비고
수박	통	통	
포도	5kg	kg	BOX
방울토마토	2kg	kg	
밀감	5kg,10kg	kg	
오렌지	10kg,20kg	kg	

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 장례식장 부침개류 규격서

품목	규격	단위	예상수량	비고
모듬전	4kg (산적/명태/동그랑땡)	Kg	157	4kg/1BOX

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 장례식장 장의차량 규격서

품목명	품명	규격	단위	비고
장의차량 위탁	버스	35인승	대	
	리무진	5인승 (링컨리무진)		
	리무진	2인승 (투리스모리무진)		



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 장례식장 건어물 규격서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예상수량	비 고
1	문어	시세규격품	마리	170	
2	가오리	시세규격품	마리	170	
3	건어포	시세규격품	마리	170	
4	오징어	시세규격품	마리	170	
5	건명태	시세규격품	마리	170	
6	대추	날개40~50개 묶음포장	개	170	
7	알밤	날개20~25개 묶음포장	개	170	
8	곶감	날개5개 묶음포장	개	170	
9	유과	날개4개 묶음포장	개	170	
10	약과	날개10개 묶음포장	개	170	
합 계				1,700	

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 장례식장 제단꽃 규격서

연번	제단사진	품명	규격	단위	비고
1		제단장식 1호	영정사진틀 : 국화50송이 소철, 유색꽃(계절꽃) - 국 화 : 220송이 - 나리꽃 : 10송이 - 극락조 : 6송이	식	영정사진틀 포함 국화 : “최상품”
2	“사진없음”	현화꽃 (생국화)	생화, 신품	송이	국화 : “최상품”
3		영정 바구니	국화 : 50송이, 바구니	개	국화 : “최상품”
4	“사진없음”	입관용 장식꽃	3종류 (백합, 국화(소국), 기타 - 단)	세트	계절에 따라 납품

### □ 납품유의 사항

- 제단에 사용 되는 생화는 **재활용 금지**
- 제단 디자인 변경이 요구 될 경우 제단틀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
- 예정수량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 수량은 상주 요구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음
- 본 규격서 외 유의사항은 계약특수조건 및 납품 유의서에 의함.

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 장례식장 음식류(식사 및 수육) 위탁공급 계약조건

거창적십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례식장 음식류 위탁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병원”은 장례식장 음식류(식사 및 수육) 공급을 “위탁자”에게 위탁하고 “위탁자”은 수탁하여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쌍방 간 계약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공급처)** 공급처는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국화원)으로 한다.

**제3조 (계약의 내용)** ① “위탁자”이 위탁 공급하는 음식류의 품목은 아래 각 호에 의해 제공하며, 제공 가격은 병원에 비치된 “접견실 음식류 가격표”에 의한다.

가. 주계약 품목(주문객 제공 음식)

품 명	규 격	단 위	예정수량	수수료	비고
식사류	·육개장 ·시래기국	인분	20,000		반찬4종
사태수육	600g	근	5,000		쌈장·새우젓 포함
- 수육 주문 최소 주문단위는 5근 기준 - 식사류 최소 주문단위는 20인분 기준					

나 내부재물(제단 상차림으로 병원의 요청에 의해 납품)

(단위 : 원)

제공구분	제공내용	비고
상식	밥, 국, 물, 조기구이, 나물5종	
발인제	수육(2근), 조기구이, 전, 나물5종	
- 나물 5종 : 콩나물, 무,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 밥은 백미로 하고 국은 탕국으로 한다. - 병원은 매월 말 납품된 내부 제물에 대한 대금은 정산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다. 외부제물(발인 후 상주의 요청에 의한 납품)

제공구분	제공내용	수수료
신산제	제단세트, 명태포, 오징어, 대추, 밤	판매금액의 %
개토제		
평토제	제단세트, 밤, 대추, 꽃감5개, 배3개, 사과3개, 제물떡, 유과, 수박, 바나나, 수육, 모듬전, 나물3종, 탕, 밥, 생선1마리, 건어포, 오징어, 가오리, 문어, 건홍합, 명태포	
노제		
반혼제		
삼우제		
화장제	제단세트, 명태포, 오징어, 문어, 대추, 밤, 꽃감 3개, 사과3개, 배3개, 바나나, 제물떡, 유과	
탈상제		
- 제단세트 : 막걸리2병, 초2개, 향1개, 젓가락, 종이컵, 접시세트 - 과일, 건어물은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병원과 사전 협의)		

③ “가”호의 위탁공급품목 및 가격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과 “위탁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서면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④ “가”호 및 “다”호 대하여 “위탁자”는 “병원”에게 해당 장례가 완료된 정산 내역서를 첨부 하여 15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 한다. 이때 수수료는 지정계좌 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⑤ “나”호 대하여 “병원”은 음식물 제공에 따른 대금 정산 후 본 계약 제7조에 의거 “위탁자”에 지불한다.
- ⑥ 가”호 및 “다”호의 판매 가격은 “병원”과 “위탁자”의 상호 협의 하에 설정하고 변경 시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수급상황 및 주변 시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고가 판매를 통한 폭리 또는 현저한 저가 판매를 통한 납품제물의 품질 저하가 발생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⑦ 위탁 음식물은 상주의 선택에 의하며 “권유” “강매”등 상주에게 구입을 독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해당 행위 적발 시 “병원”은 본 계약 조건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 및 해당 건으로 병원의 손해 발생 시 제19조에 의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계약기간) ①**

까지로 한다.

다만 “병원”은 차기 위탁 계약 시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품목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보증금 처리) ①** “위탁자”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공고 18조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병원”에게 귀속한다.

② “위탁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현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6조 (수납 및 위탁수수료)** ① 본 계약 제3조1항 “가”호 및 “다”호 위탁 물품의 매출액 일체는 “위탁자”가 상주에 수납하여야 하며, 매출내역은 물품공급 장부를 비치하여 유족의 확인 및 서명을 통해 병원으로부터 공급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매출액 수납에 있어 상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금 거래를 유도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휴대용 카드리더기 등을 구비하여 현장 카드결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으로 수납이 이루어질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7조 (대금의 청구와 지급)** ① “병원”은 발인일을 기준으로 제3조 1항 “가”호 및 “다호” 위탁수수료를 확정하여 “위탁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청구 하고 “위탁자”는 제3조 4항에 의거 수수료는 지정계좌 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매월 말 3조1항“나”호의 납품 대금을 청구 하고 “병원”은 청구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위탁자”에 지급한다.

③ 위 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쌍방이 수수료 및 납품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병원과 협의 하고, 이때 청구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 시 청구액에 대한 1항의 기준일로 (납입기일)부터 연이율 6%를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체이자를 “병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명의변경, 양도금지)** ① “위탁자”는 “병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계약당사자의 명의 변경을 할 수 없고 수탁권을 제3자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없다.

**제9조 (책임)** ① “병원”은 상가에서 “위탁자”에 물품을 주문할 수 있는 연

락처를 유족에게 제공한다.

② “위탁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위탁자”는 음식류 공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품공급 중 병원의 재산을 고장, 훼손하였을 경우 “병원”에게 즉시 보고 하고, 그 보수비용 등은 “위탁자”가 전액 부담한다.

나. “위탁자”는 음식류 공급 시 수반되는 각종 식기류(밥그릇, 국그릇, 각종 찬그릇, 수저 등)를 충분히 제공하여 “병원”이 장례식장 음식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식기류 제공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다. “위탁자”는 음식류 위탁공급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위탁자”는 식중독 등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본 계약조건 제 14조에 의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급원칙)** ① “위탁자”는 “병원”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음식류 위탁품목 납품 요구에 의거 납품하며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접견실 음식류 공급 시 본원 장례식장 내 고객이 원하는 장소 및 위치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납품요청을 받은 음식류의 최초 납품시간은 07:00시, 당일 장례식장 이용객(상주)로부터 받는 최종 주문시간은 22:00까지로 한다. 단, 상식 등 제사상 차림에 필요한 음식류의 제공은 “병원”이 요구하는 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 납품된 물품의 품질은 설익거나 변질되지 않고 먹기에 적합한 상태여야하며 보편적, 상식적으로 맛이 현저히 부당한 수준으로 판명되어 민원 발생 시 즉시 재 납품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병원”의 장례식장 담당자를 통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납품일, 납품명, 납품내역, 금액 등이 기재된 물품공급장부를

비치하여 유족의 확인을 필한 후 “병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병원”의 요구에 응하지 못해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모든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다.

⑥ 계약 외 품목의 발생 등 계약 외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상주 및 병원 장례식장 담당자, 원무팀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은 공급업체 판매가격으로 하고 계약된 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⑦ “위탁자”는 “접견실 음식류 가격표”를 각 접견실 마다 상주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⑧ “위탁자”는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하는 품목에 대하여 반드시 표기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하여 “병원”에게 금전적 피해(과태료 등)를 입히는 경우 피해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⑨ 상가의 제사상 차림에 사용된 제기류 및 “위탁자”가 음식물을 납품하면서 사용한 병원의 소유의 시설 및 물건은 병원의 재산이므로 항상 청결하게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배식실은 다음 이용객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⑩ 분향소, 분향소 내실 및 접견실 청소는 공급업체 및 병원직원 각 1인이 공동으로 청소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⑪ “위탁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및 쓰레기에 대하여 자부담으로 “위탁자”의 책임 하에 관련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⑫ 한 번 납품되었던 음식물은 절대 재사용 될 수 없으며 관련법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제11조 (보안유지)** “위탁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위탁공급 중 습득한 병원 및 장례식장 이용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안전 및 위생관리)** ① “위탁자”는 장례식장 음식류 위탁공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안전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종업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며 “병원”의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병원 직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④ “병원”은 “위탁자”의 작업장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 및 청결상태를 검사하고 그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독권)** ① “병원”은 “위탁자”의 장례식장 음식류 위탁공급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병원”의 합당한 병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② “병원”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처리 상황에 관한 제반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가입)** ① “위탁자”는 1사고당 5억, 1인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보험증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금지사항)**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사전협의를 되지 않은 일체의 물품공급행위

나. 고객 및 “병원” 직원과의 분쟁행위

다.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라. 유실물 습득 시 무단소유 또는 사용행위

마. 일반 상관례 및 사회통념,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위탁자”이 본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에 있어서 부정을 행하였을 경우  
나. “병원”으로부터 2회 이상 위생 또는 청결상태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다. “병원”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  
라.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1일 이상 영업정지를 받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마. “위탁자”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바. 계약기간 중 식중독 발생 및 급식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의 직원 또는 “병원”의 고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을 경우

사. 기타 “병원”이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병원”이 신규 위탁 공급업체와 계약 체결 시까지 “위탁자”는 급식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신규 업체와 계약 체결 및 위탁공급 업무 인계 후 계약은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비용부담 및 손해배상)** ①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납품된 물품의 변질이나 부패 및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의 위탁공급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

사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제18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계약의 유지가 어려워진 때에는 피해를 입게 되는 계약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각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소송은 "병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0조 (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있어 문구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 (관계규정)** ① 본 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및 국가계약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다.

## 장례식장 떡류 위탁공급 특수조건

거창적십자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례식장 떡류 위탁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장례식장 떡류공급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수탁 후 상가에 직접 납품하여 신선하고 품질 좋은 물품을 제공하여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쌍방 간 계약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공급처) 공급처는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국화원)으로 한다.

제3조 (품목 및 가격) ① “을”이 위탁 공급하는 떡류의 품목과 가격은 아래 “접견실 떡류 가격”을 참고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 하여야 하며 사전에 “갑”에게 단가표를 제출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가. 위탁 물품 및 판매가격 예시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판매금액	비 고
기정떡	1도	도			3도/1BOX
시루떡	1도	도			3도/1BOX
인절미	1도	도			3도/1BOX
꿀떡	1도	도			3도/1BOX

※ 주문 최소단위는 2도임.

② 위탁공급가격은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공급단가 대비 폭리를 취함으로써 “갑”의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갑”의 이미지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위탁공급품목 및 가격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별도특약) “을”은 위탁운영 외의 본원에서 상주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사상차림 제물떡의 납품이 가능하며 이때 단가는 \_\_\_\_\_ 원/1BOX로 확정한다.

제4조 (계약기간)

까지로 한다. 다만

“갑”은 2023년 위탁 계약 시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을”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떡류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대금의 수납) ① 위탁물품의 매출액 일체는 “을”이 수납하며, 매출내역은 물품공급장부를 비치하여 유족의 확인을 필한 후 병원으로부터 공급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매출액 수납에 있어 상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금 거래를 유도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휴대용 카드리더기 등을 구비하여 현장 카드결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으로 수납이 이루어질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위탁수수료의 청구와 지급)

① “병원”은 매월 말일(또는 발인일)기준 위탁수수료를 확정하여 "위탁운영자"에게 청구하고, "위탁운영자"는 제1항의 **위탁수수료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병원의 **지정계좌 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 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쌍방이 수수료 및 납품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병원과 협의 하고, 이때 청구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 시 청구액에 대한 1항의 기준 일로(납입기일)부터 연이율 6%를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체이자를 “병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명의변경, 양도금지) ①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계약당사자의 명의변경 및 수탁권을 제3자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 (책임) ① “갑”은 “을”의 공급활동에 필요한 공급에 대한 연락을 제공한다.

1. 본 항의 책임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개인적인 재수사용을 요청할 경우 병원은 그에 대해 방해 할 수 없으며, 위탁업체 물품을 강매할 수 없다.

② “을”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은 떡류공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품공급 중 재산을 고장, 훼손하였을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수비용 등은 “을” 이 전액부담 한다.

2. “을”은 위탁공급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공급원칙) ① “을”은 위탁공급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성실

히 준수하고 접견실 떡류 공급 시 고객이 원하는 장소 및 위치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유지)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위탁공급 중 인지한 “갑” 및 장례식장 이용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지시 및 통지) 본 계약에 관한 구두·서면 지시 및 통지는 본 계약서상의 주소지에 전달함으로써 “을”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금지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사전협의를 되지 않은 일체의 물품공급행위
- ② 고객 및 “갑” 직원과의 분쟁행위
- ③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④ 유실물 습득 시 무단소유 또는 사용행위
- ⑤ 일반 관례 및 사회통념,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

제13조 (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 ① 위탁품목에 대하여 유족 측의 요청으로 반품된 경우가 2회 또는 납품지연이 3회 이상 될 경우
- ② 불친절한 언행과 복장 또는 및 계약제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③ 납품한 물품이 품목설명서 기준에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처리 된 경우
- ④ 반품 요구한 물품을 신속하게 납품하여야하나 이를 3회 이상 지연 거부한 경우
- ⑤ “을”의 사정상 계약된 위탁물품을 납품 할 수 없게 된 경우(사업자등록증의 해지, 점포의 멸실 등)
- ⑥ 기타 “갑”에 불이익한 행위나 명예에 손상 및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

제14조 (비용부담 및 손해배상) ①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 ② “을”은 납품된 물품의 변질이나 부패 및 제13조에 의한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을”의 위탁공급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계약의 유지가 어려워진 때에는 피해를 입게 되는 계약의 일방이 상대방 대한 의사표시로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각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소송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7조 (기타사항) 이 계약서상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상호 협의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합의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갑"과 "을"은 이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갑"과 "을"은 이 계약서 각 1통씩을 보관한다.

## 장례식장 과일류 위탁공급 특수조건

거창적십자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례식장 과일류 위탁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장례식장 과일류공급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수탁 후 상가에 직접 납품하여 신선하고 품질 좋은 물품을 제공하여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쌍방 간 계약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공급처) 공급처는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국화원)으로 한다.

제3조 (품목 및 가격) ① “을”이 위탁 공급하는 과일류의 품목과 가격은 아래 “접견실 과일류 가격”을 참고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 하여야 하며 사전에 “갑”에게 단가표를 제출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가. 위탁 물품 및 판매가격 예시

품 명	규 격	단 위	수량	판매금액	비 고
수박	통	통	1		
포도	5kg	kg	1		BOX
방울토마토	2kg	kg	1		BOX
밀감	5kg, 10kg	kg	1		BOX
오렌지	10kg, 20kg	kg	1		BOX

※ 계절 및 수급사정에 따라 품목이 변동 될 수 있음

② 위탁공급가격은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공급단가 대비 폭리를 취함으로써 “갑”의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갑”의 이미지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위탁공급품목 및 가격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별도특약)“을”은 위탁운영 외의 본원에서 상주에게 직접 판매되는 상차림 과일 납품이 가능 하며 이때 단가는\_\_\_\_\_원/1SET로 확정한다.

제4조 (계약기간) 까지로 한다. 다만  
“갑”은 2022년 위탁 계약 시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과일류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대금의 수납) ① 위탁물품의 매출액 일체는 “을”이 수납하며, 매출내역은 물품공급장부를 비치하여 유족의 확인을 필한 후 병원으로부터 공급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매출액 수납에 있어 상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금 거래를 유도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휴대용 카드리더기 등을 구비하여 현장 카드결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으로 수납이 이루어질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제6조(위탁수수료의 청구와 지급)

① “병원”은 매월 말일(또는 발인일)기준 위탁수수료를 확정하여 "위탁운영자"에게 청구하고, "위탁운영자"는 제1항의 **위탁수수료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병원의 **지정계좌 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 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쌍방이 수수료 및 납품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병원과 협의 하고, 이때 청구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 시 청구액에 대한 1항의 기준 일로(납입기일)부터 연이율 6%를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체이자를 “병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명의변경, 양도금지) ①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계약당사자의 명의변경 및 수탁권을 제3자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 (책임) ① “갑”은 “을”의 공급활동에 필요한 공급에 대한 연락을 제공한다.

1. 본 항의 책임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개인적인 재수사용을 요청할 경우 병원은 그에 대해 방해 할 수 없으며, 위탁업체 물품을 강매할 수 없다.

② “을”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은 과일류공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품공급 중 재산을 고장, 훼손하였을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수비용 등은 “을” 이 전액부담 한다.

2. “을”은 위탁공급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공급원칙) ① “을”은 위탁공급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접견실 과일류 공급 시 고객이 원하는 장소 및 위치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유지)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위탁공급 중 인지한 “갑” 및 장례식장 이용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지시 및 통지) 본 계약에 관한 구두·서면 지시 및 통지는 본 계약서상의 주소지에 전달함으로써 “을”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금지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사전협의를 되지 않은 일체의 물품공급행위
- ② 고객 및 “갑” 직원과의 분쟁행위
- ③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④ 유실물 습득 시 무단소유 또는 사용행위
- ⑤ 일반 관례 및 사회통념,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

제13조 (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 ① 위탁품목에 대하여 유족 측의 요청으로 반품된 경우가 2회 또는 납품지연이 3회 이상 될 경우
- ② 불친절한 언행과 복장 또는 및 계약제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③ 납품한 물품이 품목설명서 기준에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처리 된 경우
- ④ 반품 요구한 물품을 신속하게 납품하여야하나 이를 3회 이상 지연 거부한 경우
- ⑤ “을”의 사정상 계약된 위탁물품을 납품 할 수 없게 된 경우(사업자등록증의 해지, 점포의 멸실 등)
- ⑥ 기타 “갑”에 불이익한 행위나 명예에 손상 및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

제14조 (비용부담 및 손해배상) ①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 ② “을”은 납품된 물품의 변질이나 부패 및 제13조에 의한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을”의 위탁공급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계약의 유지가 어려워진 때에는 피해를 입게 되는 계약의 일방이 상대방 대한 의사표시로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각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소송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7조 (기타사항) 이 계약서상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상호 협의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합의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갑”과 “을”은 이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갑”과 “을”은 이 계약서 각 1통씩을 보관한다.

## 장례식장 전류 위탁공급 특수조건

거창적십자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례식장 전류 위탁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장례식장 전류공급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수탁 후 상가에 직접 납품하여 신선하고 품질 좋은 물품을 제공하여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쌍방 간 계약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공급처) 공급처는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국화원)으로 한다.

제3조 (품목 및 가격) ① “을”이 위탁 공급하는 전류의 품목과 가격은 아래 “접견실 전류 가격”을 참고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 하여야 하며 사전에 “갑”에게 단가표를 제출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가. 위탁 물품 및 판매가격 예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판 매 금 액	비 고
모듬전	4kg(산적/명태/동그랑땡)	kg			4kg/1BOX

※ 주문 최소단위는 1박스임. 계절 및 수급사정에 따라 품목이 변동 될 수 있음

② 위탁공급가격은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공급단가 대비 폭리를 취함으로써 “갑”의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갑”의 이미지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위탁공급품목 및 가격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 (계약기간) \_\_\_\_\_까지로 한다. 다만 “갑”은 2023년 위탁 계약 시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류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대금의 수납) ① 위탁물품의 매출액 일체는 “을”이 수납하며, 매출내역은 물품공급장부를 비치하여 유족의 확인을 필한 후 병원으로부터 공급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매출액 수납에 있어 상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

고, 현금 거래를 유도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휴대용 카드리더기 등을 구비하여 현장 카드결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으로 수납이 이루어질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제6조(위탁수수료의 청구와 지급)

① “병원”은 매월 말일(또는 발인일)기준 위탁수수료를 확정하여 "위탁운영자"에게 청구하고, "위탁운영자"는 제1항의 **위탁수수료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병원의 **지정계좌 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 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쌍방이 수수료 및 납품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병원과 협의 하고, 이때 청구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 시 청구액에 대한 1항의 기준 일로(납입기일)부터 연이율 6%를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체이자를 “병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명의변경, 양도금지) ①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계약당사자의 명의변경 및 수탁권을 제3자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 (책임) ① “갑”은 “을”의 공급활동에 필요한 공급에 대한 연락을 제공한다.

1. 본 항의 책임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개인적인 재수사용을 요청할 경우 병원은 그에 대해 방해 할 수 없으며, 위탁업체 물품을 강매할 수 없다.

② “을”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은 전류공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품공급 중 재산을 고장, 훼손하였을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수비용 등은 “을” 이 전액부담 한다.

2. “을”은 위탁공급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공급원칙) ① “을”은 위탁공급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접견실 전류 공급 시 고객이 원하는 장소 및 위치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유지)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위탁공급 중 인지한 “갑” 및 장례식장 이용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지시 및 통지) 본 계약에 관한 구두·서면 지시 및 통지는 본 계약서상의 주소지에 전달함으로써 “을”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금지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사전협의를 되지 않은 일체의 물품공급행위
- ② 고객 및 “갑” 직원과의 분쟁행위
- ③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④ 유실물 습득 시 무단소유 또는 사용행위
- ⑤ 일반 관례 및 사회통념,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

제13조 (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 ① 위탁품목에 대하여 유족 측의 요청으로 반품된 경우가 2회 또는 납품지연이 3회 이상 될 경우
- ② 불친절한 언행과 복장 또는 및 계약제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③ 납품한 물품이 품목설명서 기준에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처리 된 경우
- ④ 반품 요구한 물품을 신속하게 납품하여야하나 이를 3회 이상 지연 거부한 경우
- ⑤ “을”의 사정상 계약된 위탁물품을 납품 할 수 없게 된 경우(사업자등록증의 해지, 점포의 멸실 등)
- ⑥ 기타 “갑”에 불이익한 행위나 명예에 손상 및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

제14조 (비용부담 및 손해배상) ①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 ② “을”은 납품된 물품의 변질이나 부패 및 제13조에 의한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을”의 위탁공급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계약의 유지가 어려워진 때에는 피해를 입게 되는 계약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각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소송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7조 (기타사항) 이 계약서상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상호 협의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합의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갑”과 “을”은 이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갑”과 “을”은 이 계약서 각 1통씩을 보관한다.

# 장례식장 장의차량 위탁운영 특수조건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의 장의 차량 운행계약 체결에 있어 거창적십자병원을 “갑”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을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의 장의 차량 위탁운영 업체로 지정함에 있어 “갑”과 “을”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_\_\_\_\_까지로 한다. 다만, “갑”은 2023년 위탁 계약 시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장의 차량 운영을 이행해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 체결 전까지 “갑”이 정한 계약 보증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서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 및 현금으로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 ① 현금 또는 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 ② “갑”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 금액 이상의 정액보상 특수조항이 있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 보증증권 발행 또는 각서로 대체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처리)

- ①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공고 12조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5조(위탁운영 목록 및 수수료)

- ① “을”은 총 매출액(운송료 및 기타)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①항의 수수료 금액을 확정하여 “갑”에게 고지하고, “을”은 고지된 수수료를 “갑”이 지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위탁운영 목록

분류	목록	규격	단위	비고
장의차량	버스	35인승	대	
	리무진	5인승	대	링컨 리무진
	리무진	2인승	대	투리스모 리무진

### 제6조(위탁수수료의 청구와 지급)

- ① “병원”은 매월 말일(또는 발인일)기준 위탁수수료를 확정하여 “위탁운영자”에게 청구하고, “위탁운영자”는 제1항의 위탁수수료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병원의 지정계좌 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위 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쌍방이 수수료 및 납품,대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병원과 협의 하고, 이때 청구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 시 청구액에 대한 1항의 기준일로(납입기일)부터 연이율 6%를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체이자를 “병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운행요금)

- ① “을”이 “갑”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들에게 제공하는 장의 차량의 요금(이하“운행요금”이라 한다)은 “갑”과 협약된 요금표에 의한다.
- ② 유료도로통행료, 도선료, 주차료 등 운행요금 외에 운행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유족이 부담하며, 경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운행거리에 따른 추가 운행요금을 “을”이 유족과 협의하여 정하고 추가운행요금내역을 “갑”의 장례식장 운영사무실에 통보한다.
- ③ 운행요금은 “을”의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거래내역을 기록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을”은 특수여객 운송조합 고시에 따른 행선지별 운행요금표 또는 운행요금책자를 “갑”의 장례식장 운영사무실에 고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수사항)

- ① “을” 및 “을”의 종업원은 거창적십자병원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최상의 장의 차량 및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장례식장은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하는 곳임을 감안하여 “을”의 종업원은 24시간 운영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의 장례식장에 배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배차되는 차량은 최상의 상태(냉난방, 정비, 도색 및 청소)가 유지되어야 한다.
- ④ “을” 및 “을”의 종업원은 유족에게 고가의 차량사용을 강요하지 않으며 유족이 장의 차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을” 및 “을”의 종업원은 정해진 운행요금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
- ⑥ “을” 및 “을”의 종업원은 장례식장 발인 전 도착시간을 정확히 지켜야하며 편안하고 안전한 운행으로 유족에게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⑦ “을” 및 “을”의 종업원은 발인시간 1시간 전에 예약된 장의 차량을 정해진 주차위치에 대기시키고 차량도착 및 대기사실을 운영사무실과 유족에게 알린 후 유족과 장지까지의 운행과정을 협의한다.

- ⑧“을”및 “을”의 종업원은 장지에서 사용할 음식이나 용품 등 유족들이 장의 차량에 적재할 물품을 확인하여 조치하고 발인 안내에 적극 협조한다.
- ⑨“을”또는 “을”의 종업원은 장례절차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엄숙하고 성실히 수행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호평을 받도록 노력하며, 고객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을”또는 “을”의 종업원은 단정한 복장과 용모를 갖추고 예절바른 언행을 하여야한다.
- ⑪“을”및 “을”의 종업원은 “갑”의 사업장내에서 장의 차량 공급 이외의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 ⑫“갑”및 “갑”의 고객이 노후차량이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교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을”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 ⑬“을”은 “갑”의 고객에게 최고의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 “을”의 종업원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할 경우 교육실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⑭“을”은 장의 차량 운행내역을 날짜순으로 장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갑”이 운행일지의 제출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해야 한다.
- ⑮“을”은 장의 차량 고객의 운행요금에 대한 할인요청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응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할인하였을 경우라도 병원에는 정가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 제9조(운임료 수납)

- ①“을”은 장의 차량을 제공한 후 고객에게 직접 정해진 운행요금을 청구하여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은 대리수납, 알선, 상품소개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
- ② “을”은 매출액 수납에 있어 상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카드리더기를 구비하여야 하며 고객이 카드결제를 원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현금 거래를 유도할 수 없다. 또한, 현금으로 수납이 이루어질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갑”과 “갑”의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장의 차량 공급)

- ①“을”이 “갑”의 장례식장에 공급하는 장의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적법한 차량이어야 한다.
- ②“을”이 공급하는 장의 차량의 모든 종사자는 “을”의 종업원으로 본다.

제12조(사고책임)“을”은 “을”의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발생 즉시“갑”에게 보고토록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으며 또한“을”은 “갑”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협약해지) “갑”은 협약기간 중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제7조에 위배되는 행위가 2회 이상 사실로 판명된 경우

2. “갑”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3. 장의 차량 운행요금을 임의로 높게 책정하여 받은 경우가 2회 이상 사실로 판명된 경우
4. “을” 또는 “을”의 종업원이 장의 차량 공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경우
5. “을”또는 “을”의 종업원이 고의적으로 장의 차량을 과속 또는 난폭하게 운행하여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2회 이상 적발 시, 또는 중대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6.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장의 차량 공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갑”의 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이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시 “갑”은 7일전에 미리 통보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을”은 본 협약서 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이 협약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변경사항에 대한 조치) “을”이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자본금 등 기타 상업등기사항 또는 신분상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지시) “갑”은 수시로 고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을”에게 시정 지시할 수 있다.

제17조(관할법원) 본 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기타사항) 본 계약이 정당히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손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공급원칙)① 물품 납품은 “갑”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건어물류 납품요구에 의거 납품하며 “갑”이 제시한 품목 및 기준을 정확히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된 물품의 품질은 변질되지 않고 먹기에 적합한 상태이며 보편적, 상식적으로 일반인의 미각으로 판단할 때 맛이 현저히 부당한 수준으로 판명되어 민원 발생 시 즉시 재생산 납품하여야 한다.

③ “을”의 납품장소는 장례식장 국화원 이며, “갑”의 요구 시 “을”은 2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④ “갑”의 요구에 응하지 못해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약 외 품목의 발생 등 계약 외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상주 및 국화원 실장, 총무팀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은 공급업체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9조 (보안유지)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위탁공급 중 인지한 “갑” 및 장례식장 이용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시 및 통지) 본 계약에 관한 구두·서면 지시 및 통지는 본 계약서상의 주소지에 전달함으로써 “을”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금지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사전협의를 되지 않은 일체의 물품공급행위
- ② 고객 및 “갑” 직원과의 분쟁행위
- ③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④ 유실물 습득 시 무단소유 또는 사용행위
- ⑤ 일반 상관례 및 사회통념,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

제12조 (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 ① 납품한 물품이 품목설명서 기준에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처리 된 경우
- ② 반품 요구한 물품을 신속하게 납품하여야하나 이를 3회 이상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 ③ 불친절한 언행과 복장 또는 불량제품(방부제 및 색소첨가)납품 및 계약제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④ “을”의 사정상 계약된 위탁물품을 납품 할 수 없게 된 경우(사업자등록증의 해지, 점포의 멸실 등)
- ⑤ 기타 “갑”에 불이익한 행위나 명예에 손상 및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

제13조 (비용부담 및 손해배상) ①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납품된 물품의 변질이나 부패 및 제12조에 의한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을”의 위탁공급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4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계약의 유지가 어려워진 때에는 피해를 입게 되는 계약의 일방이 상대방 대한 의사표시로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각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소송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6조 (기타사항) 이 계약서상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상호 협의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합의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계약품목 내역서(건어물)

(단위 : 원, 부가세포함)

품명	규격/단위	예정수량	단가	총액	비고
문어	시세규격품/마리	170			
가오리	시세규격품/마리	170			
건어포	시세규격품/마리	170			
오징어	시세규격품/마리	170			
건명태	시세규격품/마리	170			
대추	날개40~50개 묶음포장/개	170			
알밤	날개20~25개 묶음포장/개	170			
곶감	날개5개 묶음포장/개	170			
유과	날개4개 묶음포장/개	170			
약과	날개10개 묶음포장/개	170			
합계		1,700			

\* 예정수량은 우리병원 장례식장 수급 및 상주 주문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제단 꽃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단 꽃 구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창적십자병원을 “갑”, 계약상대자를 “을” 이라 하고, “갑” 과 “을” 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아래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1. (계약의 적용) 본 특수조건은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제단 꽃 구매 계약에 적용된다.

2. (계약목적) 본 계약은 “갑” 의 필요에 따라 “을” 이 계약물품(제단 꽃)을 신속히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_\_\_\_\_까지로 한다. 다만, “갑” 은 2023년도 계약 시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 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단 꽃을 납품하여야 한다.

4. (계약 내용 및 금액)

① 본 계약의 납품 품목 및 단가는 다음의 표에 따른다.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 위	예정수량	계약단가	비고
제단꽃	제단장식 1호	식	150		
	헌화용 국화	송이	7000		
	영정바구니	개	10		
	입관용 장식꽃	세트	120		
합계					

② 1항의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제세공과금 및 물품 인도까지의 수송 및 운임, 설치비가 포함된다.

③ 물품의 규격은 별첨의 세부규격에 따르며 “을” 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갑” 은 장례식장 이용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례식장 이용객의 개인적 사유로 제단 꽃을 타 업체에서 별도로 설치하거나 직접 조달하는 것에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을” 또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계약금액의 조정) “갑” 은 계약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① 계약 금액이 타 기관(병원 또는 동일규모의 장례식장)의 동종 물품 계약 금액에 비해 고가임이 인지된 경우
- ② 천재지변 또는 시장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꽃값이 30%이상 급·등락 하였을 경우 “갑” 과 “을” 쌍방의 합의 하에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하며, “갑” 과 “을” 은 가격 조정을 요청할 시 가격 급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 ① 계약 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 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 금액을 감액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 이 정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② “을” 은 필요한 경우 가격 증빙 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하며, 가격 증빙 자료의 위조,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갑” 은 계약 금액을 감액, 수정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7. (공급 수량의 변경) 연간 계약 수량은 추정량으로 “을” 은 연간 납품 수량의 변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갑”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공급물품의 납품)

- ① “을” 은 “갑” 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요구에 의거하여 제단 꽃을 납품한다.
- ② 계약 물품의 납품 장소는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이며 “을” 은 “갑” 의 요구 시 2시간 이내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 시간은 6:00~22:00로 하며 납품 시간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품목은 납품 시간 외에도 장례식장 담당자의 납품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을” 은 거창적십자병원의 장례식장 담당자 입회하에 물품을 납품해야 하며 납품 후 납품일, 규격, 수량 등이 기재된 문서에 장례식장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 대금 청구 시 함께 제출한다.
- ④ “갑” 의 요구에 응하지 못해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모든 책임은 “을” 이 부담해야 한다.
- ⑤ 입찰 외 품목 등 계약 외 품목의 납품이 필요할 시 “을” 은 장례식장 실장 및 총무팀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품목을 납품해야 하며 판매 금액에 계약된 낙찰률을 적용해야 한다.
- ⑥ “을” 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품 사진을 촬영하여 계약 시 “갑” 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⑦ “을” 은 납품된 품목 중 파손 및 불량, 규격미달(재사용 물품 등) 물품이 확인될 시 즉시 신제품으로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⑧ 제단 장식에 사용되는 꽃은 중간 크기의 것을 사용하며, **시들거나 꽃잎이 변색**

되는 등 불량한 상태의 꽃이나 재사용 된 꽃은 사용할 수 없다.

9. (물품 대금의 지급)

- ① “을”은 납품 건당 거래명세표를 납품과 함께 장례식장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을”은 청구 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납품 품목의 납품일, 규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문서에 장례식장 담당자의 확인을 필하여 청구서, 세금계산서(계산서)와 함께 거창적십자병원 총무팀 구매 담당에게 제출한다.
- ③ “갑”은 익월 말일에 “을”이 청구한 금액을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10. (조화 류의 처분)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행하는 화환류 일체의 처분은 유족의 의사에 따르며, 유족이 처분을 요구하거나 처분을 포기할 경우 “을”이 정리, 처분하며 “갑”은 이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11. (비용 부담 및 손해배상) 납품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을”이 납품한 물품의 품질 미달 및 기타 사유로 인해 “갑”에 대한 민·형사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해당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며, “을”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은 관련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계약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보증금은 “갑”에 귀속된다. 본 조항의 제2항 및 제4항의 위반 시 “갑”은 “을”을 부정당업체로 제재 조치할 수 있다.

- ① 계약 품목에 대하여 반품 2회 또는 납품 지연이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 ② 계약 상 명시된 규격과 동일하지 않거나 화환을 재사용 하는 등 규격 이하의 물품이 납품된 경우
- ③ “을”의 귀책 사유로 계약된 물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된 경우(사업자등록의 해지, 점포의 멸실 등)

13. (권리의무 양도금지) “을”은 계약 상 권리 의무를 “갑”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4.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법원으로 하며 계약 내용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15. (기타사항)

- ① 입찰에 의하는 자는 공고 및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갑”의 조건을 숙지한 것